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사증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F-2-2)

신청 요건: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를 위한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국민 또는 거주자는 비자 신청센터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내 단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2. 여권/여권사본 (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3. 무범죄증명서(만18세이상 60세 미만, 최초 방문자에 한함)
4. 결핵 진단서(당관 지정기관 발행)
초청인 준비서류
1. 초청장(지정 양식), 초청장 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공증필요)
2. 신원보증서(별첨서식,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2년)
3.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검사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4. 주거요건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5. 초청인 재정(소득)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p>※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소득 합계가 한 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일 것 ※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9,680,000원 단,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 이상(20,776,000원)</p>
6. 국민이 외국인 자녀 초청 경우,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주의사항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